

ISBN 978-89-5938-312-2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Q&A 사례분석

한동수 | 김수영 | 박영주 | 배종우 | 함창곡 | 권오훈 | 이현정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발행일 2014년 3월 27일

발행인 서창욱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회장

편집인 함장곡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출판윤리위원장

발행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우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Tel: +82-2-794-4146

Fax: +82-2-794-3146

E-mail: kamje@kamje.or.kr

Website: www.kamje.or.kr, www.koreamed.org

인쇄처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우 431-06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 15차 2003호

Tel: +82-31-389-8811, Fax: +82-31-389-8817

E-mail: academya@korea.com

집필진

한동수 |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 한양의대 내과

김수영 |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박영주 |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 고려대간호대 간호학과

배종우 |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

함창곡 | 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중앙의대 건강증진센터

권오훈 |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 한솔병원 내과

이현정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학학술정보실

머리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집)는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28일에 창립되었다. 2006년 7월부터는 중복출판, 표절, 저자되기 등의 연구출판윤리 문제가 의학계열에도 관심사로 대두되어, 의편집 내에 출판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출판윤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판윤리위는 그동안 출판윤리에 관한 각종 홍보, 선언, 워크숍, 교육, 심포지엄, 학술지원 외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년 01월 초판, 2013년 3월 2판 발행)과 <의학논문 중복출판 사례집> (2011년 8월)을 출판하여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중복출판의 연도별 추이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였다.

그 동안 각 학회, 대학, 기관, 개인들이 출판윤리에 관한 의문점이나 질문 사항을 의편집에 질의해 왔는데 최근까지 그 질문은 약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 질문 내용은 출판윤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의 질문이 많았다. 의편집 출판윤리위에서는 그동안 접수되어 답신을 보낸 질의들을 모아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면, 실무적으로 학술지 발간 현장에서 출판윤리를 잘 이해하고 업무 개선을 이를 목적으로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현장 실무에서 의문이 생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음집이 의학 학술지를 발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출판윤리의 이해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파 이를 계기로 출판윤리가 더욱 확고히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3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 위원장 함 창 곡

목 차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Q&A 사례분석

연구윤리와 출판윤리가이드라인 / 1

연구대상
설문조사의 저자됨
출판윤리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 출판
학술지 투고 규정의 연구, 출판윤리항목
학술지에 사용된 표나 그림을 사용할 경우
이해관계 공지문
아이디어 표절
동일 대상의 논문 작성
표절

저자됨 / 4

저자됨
저자순서와 책임저자
다기관 연구에서 저자
저자 수 제한
다기관 연구에서 제1저자, 책임저자
학위논문을 연구결과 제시물로 사용한 경우
학위논문 관련 이해관계 (1)
학위논문 관련 이해관계 (2)
저자의 소속표기 (1)
저자의 소속표기 (2)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작표기

중복출판, 이차출판 / 9

폐간 학술지의 재게재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자표기 (1)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자표기 (2)
다학제 지침의 공동게재
공동 학회의 가이드라인의 다 학술지 게재
중복출판, 다른 과에서 동일 대상을 증례로 한 경우
동일 대상의 다른 영역 게재
중복출판, 다른 언어이나 일부 대상이 같은 경우
중복출판, 대상 일부가 같으나 연구목적이 다른 경우 (1)
중복출판, 대상 일부가 같으나 연구목적이 다른 경우 (2)
중복출판, 일부 같은 대상이 포함되고 다른 언어로 발표된 경우
중복출판, 대상 또는 관찰기간이 늘어난 경우
중복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1)
중복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2)
중복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3)
중복출판, 표절 문제 처리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Q&A 사례분석

중복출판, 연구 결과, 방법, 결론이 동일하지만 대상을 분할한 경우
중복출판 -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하여 게재된 경우
중복출판 - 게재된 한글 학위논문을 영문논문으로 게재하면서 저자도 변경한 경우
초록집에 발표된 원고의 학술지 게재
타 학술대회 발표 연구의 게재
학술대회 초록집과 이차출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대중 매체에 게재할 경우

분절출판(salami) / 18

연구 기간과 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된 분절출판
분절출판, 연구 대상의 범위가 다르나 일부 대상이 같은 경우
분절출판, 동일 대상을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결과를 보고한 경우
동일대상에서 여러 결과가 확인된 경우

지적재산권과 Open Access / 20

블로그에 올릴 경우 지적재산권
다학제 임상진료지침의 여러 학술지 게재
Open Access 저널에서 저작권인계동의서
Open Access 학술지의 인용
Open Access 적용 시기
Open Access 관련 인용 (1)
Open Access 관련 인용 (2)
외국학술지의 논문인용
한글, 영문 학술지의 동시 발행
저작권인계동의서
국문번안한 설문지의 사용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자료 사용 동의
투고규정 인용

위반자, 위반논문 처리 / 25

Retraction 논문의 처리
취소논문 데이터베이스 처리
자진취소 논문의 처리
논문의 취소 처리
중복출판 발견 후 출판사에 통보
임상시험의 보고

연구윤리와 출판윤리가이드라인

연구대상

환자를 모아서 질병의 특징을 파악하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논문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답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자료를 논문에 포함한 경우 출판윤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보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공저자로 참여하거나 최소한 자료를 제공해 준 기여자에 대한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이 논문에 표기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의 저자됨

A 교수는 특정 질환의 진료행태를 알기 위한 설문을 작성하여 90명의 의사에게 질의를 하였다.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설문에 응한 의사를 공저자로 해야 할지 논란이 있다.

답변:

90명을 공저자로 하는 것은 안된다. 저자됨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만을 저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순히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을 감사의 글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90명의 설문응답자 의견 뿐 아니라 병원의 자료를 제공하였다면 90명을 기여자로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포함할 수 있다.

출판윤리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 출판

의편집에서 발간한 출판윤리가이드라인 전체 내용을 특정 학술지에 게재 하여도 되는가?

답변:

출판윤리가이드라인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표지 하단에 “본 가이드라인 전부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발행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허락 하에 게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인쇄 교정쇄가 나온 후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학술지 투고 규정의 연구, 출판윤리항목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필요한 연구 및 출판윤리 관련 항목은 무엇인가?

답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wwWork in Medical Journals (Updated December 2013)에서 다음 항목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Roles & Responsibilities
 - Defining the Role of Authors and Contributors
 - Author Responsibilities—Conflicts of Interest
 - Responsibilities in the Submission and Peer-Review Process
 - Journal Owners and Editorial Freedom
 -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 Publishing & Editorial Issues
 - Corrections and Version Control
 - Scientific Misconduct, Expressions of Concern, and Retraction
- Copyright
 - Overlapping Publications
- Correspondence
 - Supplements, Theme Issues, and Special Series
- Sponsorship or Partnership
- Electronic Publishing
- Advertising
- Journals and the Media
- Clinical Trial Registration

학술지에 사용된 표나 그림을 사용할 경우

학술지에 사용된 표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나?

답변:

Open Access 학술지에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하고 있을 경우에는 표, 그림을 인용하는 학술지가 비영리 목적으로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 없다. 상업출판사에서 발행된 학술지나 단행본에 수록된 표나 그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Copyright Clearance Center에서 승인을 받는다. 우리나라 학술지 논문의 표, 그림이라 하더라도 상업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것과 같이 영리목적 학술지에서 사용하려면 학술지 발행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 공지문

한글판 “잠재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위한 ICMJE 서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선언의 유효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

ICMJE에서 요구하는 이해관계 공표와 관련한 유효일의 기준은 논문의 개념화한 시점에서 36개월 이전을 의미한다. 유효일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ICMJE는 36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NIH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아이디어 표절

영문 종설을 작성하면서 이미 출간되어 있는 기존 종설의 차례나 내용과 유사하게 작성하였지만 동일한 단어, 표현을 자제하여 CrossCheck 유사도가 4% 밖에 되지 않은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가?

답변:

표절의 유형에는 그대로 복사하는 verbatim, 같은 틀과 문장을 다른 문구로 표현하는 paraphrasing, 요약하는 summarizing 이 있다. CrossCheck 유사도가 4% 정도로 낮은 편이고 논문의 내용전개, 글의 전개순서와 내용이 표절의 의심을 사지않도록 표현하였지만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논문 일부에서 원저자의 주관적인 표현을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논문의 다른 부분에는 원본에 없는 다른 내용을 첨가하여 전혀 다른 논문처럼 인식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허락이나 인용 없이 기존 종설을 발행한 원저자의 논문을 모방한 것으로 paraphrasing 유형의 중대한 표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 대상의 논문 작성

연구 대상은 동일하지만 주된 연구 방법을 다르게 접근하여 출간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같은 대상이지만 새로운 목적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독립적인 논문으로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저자가 같은 경우 뒤에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먼저 발간된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지 않고, 대상과 방법에서 기존 논문의 대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표절의 범주에서 문장재사용(자기표절, text recycling)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판윤리위반에 해당한다.

표절

종설 논문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종설을 참고하며 작성하였다. 일부 문장은 적절한 표현이 없어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가?

답변:

종설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참고한 타인의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하여도 논문의 기술이 저자의 독창적인 기술이 아니고 타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여러 문단(paragraph)이 존재하는 경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며 문장재사용(text recycling)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문장을 기존 논문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독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표절로 간주된다.

저자됨

저자됨

A 씨는 자신의 직장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1저자가 바뀌어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것을 알았다. A 씨의 학위논문을 지도한 B 교수는 관련 학술지에 A 씨를 제1저자로 표기하여 논문을 투고하여 출간하였으며 이어 영어로 번역하여 A 씨를 제외하고 다른 인사를 포함하여 영문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이를 정부연구비 지원기금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A 씨가 영문 논문에 저자됨을 주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학위논문은 수여자 1인의 논문이지만 의학연구의 특성상 단독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연구 참여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도교수는 연구의 아이디어, 실험방법의 디자인, 결과의 정리, 해석, 원고 작성 등 전 과정을 학위수여자와 상담,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학위논문은 심사과정은 있으나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에 포함되고, 같은 부서의 교수와 친밀한 관계의 외부인사로 심사진이 구성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문가심사(peer review)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학위논문은 공개된 학술정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차출판에 해당되지 않고, 학위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비로서 학술정보가 된다.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위수여자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표절행위이다. 또한 국문 논문이 발표된 편집인에게 사전 양해없이 출판원고를 번역하여 다시 영문으로 투고하였으므로 중복출판에 해당한다. 다만 학술지는 B 씨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방법이 없으며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자순서와 책임저자

A 씨는 논문을 투고하면서 책임저자와 제1저자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 가나다 순으로 저자를 배열한 후 투고하였다. 출간 후 출판사에 저자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출판사는 수록저자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답변:

책임저자는 교신저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guarantor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ICMJE가 규정한 저자 기준에 따르면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을 승인 한 사람으로 저자를 규정한다. 교실 단위의 논문인 경우 저자 가운데 가장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저자가 되고, 제1저자는 논문의 주인이자 대표저자가 된다. 물론 제1저자는 동시에 책임저자가 될 수도 있다.

저자의 배열 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논문의 공헌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인 선후배 순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논문의 작성단계 또는 개념 정립단계부터 저자 여부와 저자 순서를 결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학술지에선 투고할 때 저자들의 공헌도와 저자순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록저자의 변경은 COPE의 flow chart를 참고하여 수록저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기관 연구에서 저자

특정 질환의 진료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관련 의사에게 진료과정을 묻는 설문을 하였고 그 결과를 관련 학술지에 논

문으로 투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라 설문에 응답한 모든 사람을 다 저자로 넣을 수도 없고, 누구를 선별해서 넣을 수도 없어 고민 중이다. 또한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지 못한다면 설문에 응해준 사람의 이름을 논문의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기재해야 하는지, 아울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였다.

답변: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는 여러 기관의 임상 결과 자료를 종합하는 연구(collective study)가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이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분들의 소속과 성명을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꼭 저자가 논문에 감사의 글로 표시하고 싶다면 포괄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식의 언급이 가장 적절한 방안일 것이다. 통상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익명으로 해서 응답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저자가 응답자를 감사의 글에 기여자로 표시하고 싶다면 이들 모두에게 각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저자 수 제한

다기관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자가 투고 예정 학술지에서 저자 수를 제한하여 처리 방법을 고민 중이다.

답변:

최근 연구가 복잡해 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 논문에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가 많아져서 저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학술지가 투고된 논문의 저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저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술지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원고를 투고하려는 사람은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저자 수를 제한해서 투고해야 한다. 학술지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허가하려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투고규정을 고쳐야 한다.

다기관 공동연구에서 저자됨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ICMJE 에서 규정하는 저자됨의 원칙을 중심으로 저자를 정하고 기여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며 나머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구참여자 또는 기여자로 표기하여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명단을 포함하면 될 것이다.

다기관 연구에서 제1저자, 책임저자

다기관 연구 결과를 투고할 때 제1저자와 책임저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답변:

연구의 준비, 진행, 논문작성, 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ICMJE에서 요구하는 저자됨의 요건을 갖추고, 논문의 공저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저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다만 투고 학술지의 편집정책에 따라 공동 제1저자를 용인하는 것이 다르므로 제1저자를 1명으로만 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 책임저자의 수 역시 학술지의 정책에 따라 편집인이 정한다. 국제적인 추세는 논문 투고에서 인쇄까지 여러 교신업무와 논문에 대한 책임을 위해 책임저자 수를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술지에 따라 2인 이상인 경우를 인정하는 예도 있다.

학위논문을 연구결과 제시물로 사용한 경우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학위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기관의 연구업적 관리부서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이라 제소하였다.

답변:

의학연구는 교수, 대학원생,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생 제자는 그 연구진의 한 사람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학위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연구결과보고서에 이 연구를 주도한 대학원생의 이름이 없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역시 연구결과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는 공개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말하는 저자 개념의 정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는데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에서 저자명단에 석사논문 제자의 이름이 없다면 유령저자 유형의 출판윤리 위반에 해당하지만, 연구결과보고서는 비공개 문서이고 연구결과물의 최종 성과물인 학술지 발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즉 보고서이니까 대학원생을 빼고 연구책임자 명의로만 기재하고, 나중에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에는 공저자로 넣을 수도 있다. 연구결과보고서 공동연구자 명단 누락은 출판윤리에서 말하는 유령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위논문 관련 이해관계 (1)

A 씨는 B 씨 지도아래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였다. B 씨는 A 씨 학위 지도 후 수 년 뒤 사직하였으며, A 씨는 자신의 학위 논문이 자신의 허락없이 학위를 받은 기관의 C 씨가 제1저자, 원로교수인 D 씨가 책임저자로 출간된 사실을 알았다. A, B 씨는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책임저자 D 씨는 해당 논문을 교내연구비 업적 보고를 위한 결과물로 원고에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표기를 하였다.

답변:

학위논문은 학술지에서 규정하는 전문가심사(peer review)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며, 서지사항을 갖추어, 학술지에 투고하여 전문가심사를 거쳐 출판하면 비로소 공개되는 논문(article)이 된다.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때 저자됨과 저자 순서는 연구자 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 때 일반적으로 학위수여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연구자 팀에서 의논하여 학위수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저자됨의 요건을 갖추고 그 팀의 사정에 의해 그 팀에서 논의하여 저자순서를 정한 의견이라면 그 사정을 따르면 된다. 학위수여자가 제1저자가 아닌 경우는 투고 논문의 저자 모두에게 합의된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위수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제1저자가 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 모두가 현재 투고된 원고와 저자됨에 대하여 확인하는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책임저자 D가 교내연구비 업적 보고를 위해서 오래 전 학위논문을 업적보고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는 출판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D 씨가 책임저자가 된 논문과 학위논문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편집인보다는 저자가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동일한 내용이라면 교내 연구비 수혜부분의 기술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연구비 부분의 기술이 없이 출판한다면 오래 전 연구 결과라도 현재 그 독창성이나 학문적인 주장의 원저성이 유효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고가 가능하다. 이는 시점보다는 그 내용의 학문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학위논문 관련 이해관계 (2)

후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학위 논문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가? 물론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과제가 결과가 나왔으나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연구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기존의 계획서 이외의 자료들을 모았고 이런 자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중이다. 후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를 학위 논문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답변:

후원받은 연구과제의 학위논문 자료 사용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후원받은 연구과제의 결과가 이미 나와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학위수여 전에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이므로 학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어 대학 방침에 따른다. 만약 대학이 학위수여 전 학술지 게재를 허용하거나 의무화한다면 후원받고 출판된 논문의 연구 결과에 추가자료 결과를 덧붙여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덧붙이기 출판(imalas)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학 방침으로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학위논문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새로 만든 미발표 자료로만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원받은 연구과제의 결과가 나왔으나 학술지에 게재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처를 밝히고 추가자료의 결과와 함께 학위논문 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덧붙이기 출판(imalas)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자의 소속표기 (1)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작성된 연구를 타 기관으로 옮긴 후 투고하는 경우 소속 표기는?

답변:

연구를 수행한 시기와 논문 발표 시기에 저자의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기관을 옮긴 경우 실제 연구가 진행된 당시 기관을 기재하고 표지 하단에 현재 저자의 소속기관을 따로 기재한다. 이는 연구가 진행된 기관을 논문의 출처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책임저자 뿐 아니라 제1저자 또는 다른 공저자라도 모두 동일하다.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는 소속이 있었으나, 출판 시점에 퇴직한 경우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연구 당시의 소속을 존중해야 하므로 연구가 수행될 당시 소속기관을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책임저자는 독자와 교신을 위하여 주소 명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기관 주소로 할 지 또는 거주지 주소로 할 지는 책임저자가 결정하면 된다. 다만 현재 소속이 없음을 명기하는 문제는 해당 저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표기 (2)

의과대학 교수는 병원과 의과대학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논문을 작성할 때 소속은 예를 들어 'Department of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로 표기한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없는 새로운 부서가 생겨 명기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병원이 대학에 연계된 교육병원이라도 대학에서 정식발령을 받은 교원이나 그 교실의 전공의가 아니면 대학소속을 표기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임의, 임상교수 등은 대학 교원이 아니므로 병원만 표기하면 된다. 대학에 조직이 없고 병원 진료과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Department of OOOO,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처럼 병원만 소속으로 표기한다. 그런데 교실 조직 유무보다는 사실 저자 개인이 대학에서 임용된 신분인가에 따라서 대학명 표기를 해야 정확할 것이다.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작표기

다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진 임상지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학술지 3곳에 동시에 게재하려고 한다. 임상지침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에 같은 내용을 논문의 내용 및 제1저자는 같지만 각 학술지에는 다른 책임저자로 표기하여 동시에 게재할 경우는?

답변:

공통 관심을 가지는 내용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이 자료의 작성자와 제공자가 누구인지, 여러 곳에게 게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같은 내용이 여러 잡지에 게재된다는 것을 편집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경우 저자나 작성자는 모두 동일하고 같은 논문이므로 저자 순서나 책임저자는 동일해야 한다. 게재 학술지가 다르다고, 저자와 책임저자가 달라질 수는 없으며, 해당 논문의 교신의 책임자는 책임저자이다. 만일 두 학술지가 책임저자를 달리하면 논문의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고, 업적을 나누기 위한 행위로 오해받기 때문에 저자됨(authorship)의 원칙에 따라 기술한다.

중복출판, 이차출판

폐간 학술지의 재게재

학회에서 수년 전 기존 한글 학술지 이외에 영문 학술지를 별도로 만들고 6개월 간격으로 2회 발간 후 폐간하였다. 당시 이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영문논문을 저자 승인을 거쳐 국문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가?

답변:

폐간된 잡지이기 때문에 동일 기관에서 발행하는 다른 공식학술지에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논문의 내용(대상, 방법, 저자명 등)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되고, 폐간된 학술지의 서지정보 즉 학술지명, 권, 호, 페이지를 기술하여 이차출판임을 밝혀야 한다. 국문학술지에 같은 내용으로 한글로 게재하면 중복출판이다.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자표기 (1)

여러 국가의 저자가 공동 참여한 논문을 국외학술지 게재 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하려 한다. 국외학술지 논문의 저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하려면 이차출판을 위한 절차, 논문에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저자됨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또한 번역에 참여한 사람이 저자됨을 가질 수 있는가? 제1저자, 책임저자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답변:

이미 출판된 외국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게재하는 것은 이차출판이 아니라 중복출판에 해당된다. 즉, 중복출판은 이미 어느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다시 다른 학술지에 출판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차출판은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한다.

- 1) 일차와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에게 동의를 받고,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은 일차출판 논문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출판된 학술지의 선취권을 존중한다.
- 3)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이차출판은 축약판으로 충분하다.
- 4) 이차출판은 일차출판의 자료와 해석을 가감없이 성실하게 기술한다.
- 5) 이차출판될 논문의 표지에 이 논문이 이차출판임을 명기하고 원전을 밝혀서 독자, 상호심의자, 색인자 등이 알도록 해야 한다.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자표기 (2)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영문논문에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한글논문으로 게재하면서 이를 밝힌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이미 영문으로 발표된 논문을 한글로 바꾸어 발표하는 것은 중복출판이다. 원자료 일부와 최근 자료를 추가하여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처럼 투고해도 연구의 핵심결과가 포함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한 번의 연구로 한 개의 논문 발표가 일반적이지만 내용이 다르다면 여러 개도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 연구, study group 연구, 또는 다기관 연구 등과 같은 대규모 연구인 경우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내용이 복합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지면의 제한 등으로 간추려 투고하게 되므로 내용이 중복없이 나눌 수 있는 경우 제1보, 제2보 등으로 동일 학술지에 연속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허용되는 이차출판은 연구의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연구자의 이름이나 순서 또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연구의 내용을 간추린 축약판은 허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양측 편집인의 허가를 얻어 반대의 순서로, 즉 부피가 큰 국내 논문을 먼저 게재하고 줄인 논문을 외국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독자층이 다르던지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학제 지침의 공동게재

학회의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고 이를 학회의 공식 국문 학술지에는 한글로, 동일학회의 공식 영문학회지에는 영문으로 게재하기 위해 학회의 양쪽 편집위원회의 동의와 승인을 득하였다. 동시에 같은 호 issue에 게재하는 것과 1~2개월의 차이를 두고 다른 호 issue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가능하다.

공동 학회의 가이드라인의 다 학술지 게재

4개의 학회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학회지에 게재하려고 할 경우 저작권료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즉, 1) 중복으로 게재되는 모든 학회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가? 2) 만약 모든 학회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면 이를 받지 않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3)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표와 그림을 도용해서 사용하였다면 이 표와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 학회나 저자에게 모두 사용허가서나 양도동의서를 받아야 되는가?

답변: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4개의 학회지에 게재 가능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같은 내용이고, 서지사항도 같으므로 4개 학회지에 동일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각각 게재하고자 할 때, 각각 잡지는 논문의 종류를 <Editorial>이나 <가이드라인 소개>라는 항목으로 해서 (중설이나 원저로 취급하지 않고) 분류하고, (주)나 기타 방법으로 게재하는 목적과 이 가이드라인이 어디 출처인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이 방법을 취하면 중복출판은 아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본래 만든 특정 학회나 집단의 소유(저작권이 특정 학회에 있음)이고 이미 허락된 상태에서 게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출판 후, 출판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하고 있는 Open Access 학술지이면 자료가 전부 공개 된 것이기에, 그 내용을 다른 자가 표나 그림을 사용하고자할 때, 출판된 학회지의 학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복출판, 다른 과에서 동일 대상을 증례로 한 경우

같은 병원의 감염내과와 안과에서 같은 증례로 논문을 작성하고 각각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였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또한 한 과에서 먼저 논문을 투고하고 원고가 게재된 후, 타 과에서 “○○ 학술지에 게재 완료된 논문에 대한 의견”과 같은 형식으로 타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원칙적으로 한 증례는 한 개의 증례보고가 원칙이며 같은 증례에 여러 과들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합된 증례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각 출판되었을 경우 독자들이 다른 증례로 오해할 수 있고, 나중에 증례의 수집에서 한 증례가 각각 다른 증례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투고 출판된 증례에 대하여 타 과에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먼저 처음 논문의 증례 출처를 밝히고, 타과에서의 발표된 연구목적(focus)과 달라야 하고 이 경우에는 증례 보다는 addendum이나 단보(brief communication)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 대상의 다른 영역 게재

특정 질환의 전신마취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취관리의 예측될 수 있는 어려움으로 순환기내과 자문을 받았다. 이후 이 사례에 대한 연구를 마취과에서 준비하던 중 우연히 흉부외과에서도 이 동일한 특이 환자사례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일한 환자이나 두 과에서 이 환자사례에 대한 연구는 주제를 다루는 시각이나 접근방식에서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대상은 동일하나 관점이 다르면 중복출판이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례이므로 사례의 기본적인 기술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동일한 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두번 째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에서 게재의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먼저 투고한 논문에 대한 정보와 동일 대상임을 알려줌으로써 편집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복출판, 다른 언어이나 일부 대상이 같은 경우

두 논문(A, B)은 한글논문(A)과 영문논문(B)이다. 두 논문은 2008년 전국 다수의 병원에서 국내 요로감염 진료지침 작성을 위하여 급성 방광염과 급성신우염 환아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A, B 논문에서 급성 신우염 환아는 동일 대상이며 두 논문의 데이터의 모집방법, 참여병원 및 연구기간이 같다. 그러나 A 논문은 방광염과 신우염을 비교하고, B 논문은 신우

염의 항균제 내성만을 언급하여 두 논문의 가설과 목적은 다르고, B 논문은 A 논문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 논문에서 A 논문의 일부 결과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B 논문에서 A 에서 발표된 신우염 환자의 자료를 인용없이 기술한 것은 이미 A 논문이 발표된 상태에서 문장재사용(text recycling)일 수 있다. 특히 A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Open Access (OA) 저널이 아닌 경우 반드시 B 논문 작성과정에서 A 논문의 일부 표 사용에 대해 해당 학술지의 편집장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Open Access (OA) 저널이라도 이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중복출판일 수 있다.

중복출판, 대상 일부가 같으나 연구목적이 다른 경우 (1)

비교적 빈도가 낮은 질환을 가진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방향(예를 들면 한 논문은 진단, 다른 쪽은 치료 등)의 연구가 시행되어 발표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빈도가 낮은 질환을 공동연구로 실태 조사하는 것이고, 연구목적이 다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 환자 중 일부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동일한 대상자임을 표기한다면 중복출판이 아니다.

중복출판, 대상 일부가 같으나 연구목적이 다른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치료받은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예후 관련한 인자를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라 A 논문은 특정 세포형으로 분화 유무가 전이병소와 예후에 미치는 영향, B 논문은 전이 시기와 갯수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 C 논문은 전이병소 제거술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D 논문은 완전 전이병소 제거술 후 면역치료 여부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각 관련요인들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 분석하여 하나의 연구논문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편의 연구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었고 제1저자와 책임저자가 4개 논문에서 동일하며 또한 동일한 문장이 각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소위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으로 지적하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의 한 유형이고, 분절출판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중복출판, 일부 같은 대상이 포함되고 다른 언어로 발표된 경우

두 논문(A, B)은 영문논문(A)과 한글논문(B)으로 책임저자는 같으나 공동저자는 다르다. A 논문은 short communication이고 B 논문은 원저이다. 대상자가 특정 계층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B 논문에서는 A 논문이 제한이 있어서 수행되었음을 밝히면서 A 논문을 문헌에 인용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두 논문 모두 표기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가설, 연구장소 및 연구방법으

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유사하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연구가 다른 기간에 수행되어 대상의 중복이 없었다면 중복출판의 엄격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동일한 가설, 연구장소 및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결론도 거의 같이 새로운 정보가 없다. 광의의 중복출판이다.

중복출판, 대상 또는 관찰기간이 늘어난 경우

A 교수가 증례(같은 주제)를 묶어서 한글논문으로 이미 출판하였다. 같은 병원의 B 교수가 앞의 증례에 새로운 증례를 합하여 분석한 논문을 SCI급 저널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책임저자는 A 교수, 제1저자는 B 교수로 하고 이 논문에 앞의 증례가 포함되었다고 참고문헌을 통해서 내용상에 기재할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ICMJE의 내용을 인용하면,

"When submitting a paper, the author must always make a full statement to the editor about all submissions and previous reports that might be regarded as redundant or duplicate publication of the same or very similar work. The author must alert the editor if the manuscript includes subjects about which the authors have published a previous report or have submitted a related report to another publication. Any such report must be referred to and referenced in the new paper. Copies of such material should be included with the submitted paper to help the editor decide how to handle the matter."

따라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고 고찰에 내용을 밝히는 것 외에도, 위의 내용과 같이 편집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쓰고 별책을 함께 보내서 해당 학술지 편집인이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복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1)

A 논문은 수년 전 여름 개원의 연구망을 통해 '가정의는 어떤 경우 의뢰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고, B 논문은 동일 연구자가 같은 연구를 다른 시기에 실시하여 '가정의는 어떤 경우 의뢰를 하는가?'를 다시 투고한 것이다. 대상은 동일하지 않으나 방법과 분석은 거의 동일하고 결과에는 성별 분석이 추가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동일 연구자가 동일한 대상 질환에 대해 연구를 추가하거나 기간, 대상을 추가한 경우도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방법과 결론이 같고 단지 방법에 작은 부분이 추가된 것이므로 덧붙이기 출판이다. 이러한 논문의 경우 원저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인에게 드리는 글'의 형태로 이전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의 중요성은 편집인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다.

중복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2)

두 논문(A, B)은 코호트대상군에서 같은 간암발생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B 논문은 첫 번째 A 논문에서 분석한 간암 발생 요인으로 공복시 혈당 요인 외에 대사증후군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B 논문에서 먼저 출판한 A 논문의 '대상'이 B 논문에 포함되었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참고문헌에서는 A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원칙적으로 덧붙이기 출판이다. 나중에 수행된 연구에서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가치 있는 논문이 될 수도 있으나 추가된 새로운 요인이 연구의 새로움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대상만을 확대한 덧붙이기 출판이다. 이 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요구된다.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같은 내용이므로 이미 유사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고,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서론에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서론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로 일차 연구 결과가 소개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추가연구가 진행된 당위성을 밝혀야 한다. 대상의 중복여부 역시 언급해야 한다.

중복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3)

A 논문은 2004년 전체 우울증 외래 환자의 현황(약물투여, 공존질환 등) 분석을, B 논문은 2002년 우울증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경과 관찰하여 약물순응도 조사를, 그리고 C 논문은 2002년 우울증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경과 관찰하여 약물순응도에 따른 보험청구상 약물 재투여, 입원, 응급실 방문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다시 연령대별로 우울증을 분석하거나 특화해서 분석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A 논문은 대상과 주제가 다르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B 논문과 C 논문은 동일 대상과 주제이므로 C 논문은 B 논문의 덧붙이기 출판이다. 단, C 논문의 출판을 위해서는 C 논문의 대상 및 방법에 B 논문이 포함되어야 하고, B 논문을 참고문헌에 인용하면서 C 논문을 투고한 학술지 편집장에게 허락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B 논문과 C 논문은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항 후 준비하는 논문은 앞의 논문들과 대상과 주제가 같은데 논문의 관점만 다른 것이어서 앞의 논문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분절출판의 위험이 높다.

중복출판, 표절 문제 처리

기 발행된 국내 학술지의 특정 논문(A)의 그림이 동일한 시기의 국외 SCI 학술지에 게재된 B 논문에 사용되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스스로 A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출판으로 인한 제재는 책임저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모든 저자에게 해당되는가? 연구비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과 연구비 제공기관에 모두 통보를 해야 하는가? 중복출판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 경우 책임저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제기된 문제이어서 고의적인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처리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답변:

가독성을 고려해 A 논문, B 논문의 접수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B 논문의 접수일이 A 논문 승인일 다음이므로 선취권은 A 논문 학술지가 가지고 있다.

두 논문의 주제어와 저자가 대부분 중복되고, 두 논문의 경우 A 논문은 B 논문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임상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물로 파악되므로 두 논문은 병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논문을 합칠 수 있다면 분절출판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도 있고, 중복출판이라면 retraction의 사유가 된다.

중복출판 문제와 별개로 두 논문의 동일한 그림은 B 논문이 A 논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명백한 표절에 해당된다. 이 점에서 원칙적으로 B 논문은 retraction되어야 하며, 중복된 저자는 모두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처벌의 수위는 학회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다.

B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해당학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만일 학술적 가치가 있어서 논문을 존속시키고자 한다면 A 논문의 그림과 동일한 B 논문의 그림은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Erratum처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출판윤리의 처리와 적용에서 보편적이고 통상적이지 않다. 만일 학회에서 Erratum 절차를 선택한다면 이 절차를 취한 후에 A 잡지에 그 사실을 알려서 양해를 얻는 것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판단 역시 해당학회에서 해야 한다.

중복출판, 연구 결과, 방법, 결론이 동일하지만 대상을 분할한 경우

두 논문은 young mice (A 논문)와 mature mice (B 논문)를 대상으로 약제유도 경련의 특정 약제의 항경련 효과를 파악하였다. 가설에서 B 논문은 A 논문과는 달리 연령효과를 보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두 논문은 저자가 모두 동일하며, 연구방법, 결과 및 결론 역시 모두 동일해서 새로운 정보가 없다. 또한 B 논문에서 A 논문의 문장 재사용이 발견된다. 그러나 두 논문의 연구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복출판에 해당되는가?

답변:

연구기간이 동일하다면 분절출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다르고, B 논문의 목적인 연령효과의 가설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B 논문은 성립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B 논문의 문장 재사용 의심 부분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문장을 기술할 때 A 논문과 같지 않도록 새롭게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B 논문을 발표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면 A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 correspondence나 letter to the editor 혹은 brief communication으로 A 논문의 결과를 기초로 연속성을 갖고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중복출판 –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하여 게재된 경우

두 논문(A, B)은 한글논문(A)과 영문논문(B)으로, 일부 저자의 차이가 있지만 책임저자가 동일하다. 논문내용 즉,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영문초록, 그림 및 그림 설명이 모두 동일하고 참고문헌도 거의 동일하다. 두 논문의 투고시기도 거의 같아서 한글논문 투고 3개월 후에 영문논문을 투고하여 이중투고를 하였다. 영문논문 투고 당시 먼저 투고한 한글논문 투고 사실을 영문논문 편집장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두 논문이 모두 같은 해에 게재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저자가 알리지 않았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되는가?

답변:

전형적인 중복출판이다.

중복출판 – 게재된 한글 학위논문을 영문논문으로 게재하면서 저자도 변경한 경우

모씨는 박사학위(A)를 취득한 후 해당 논문(B)을 지도교수와 함께 공저자로 학위논문을 OO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후 수년 후 모씨는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이름을 제외하고 제3의 저자와 함께 영문으로 국외학술지에 게재(C)하였다. 중복출판의 심되자 모씨는 B 논문의 취소(retraction)를 요청하였다.

답변:

박사 학위논문을 정리해서 저자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OO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문제가 없는 출판 절차이다. 그러나 수년 후 내용이 거의 유사한 영문논문을 출판한 것은 중대한 중복출판이며, 저자가 바뀐 점과 과거 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사실은 저자가 중복출판을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구출판윤리에서 연구 부적절행위에 속한다. 영국의 'COPE 가이드라인'과 의평협 발행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복출판의 경중을, 경미한 중복을 일부 중복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하위 집단, 추적관찰 기간 연장 등)으로, 중대한 중복을 중복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전부, 일부 자료가 동일, 제목, 저자 순서 변경, 과거 논문 인용 하지 않는 등 저자가 중복게재를 숨기려 한 증거가 있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C 논문에 포함된 제3의 저자는 실제 연구에 기여가 없는 선물(명예)저자일 가능성이 크다.

OO학술지에 B 논문을 철회(취소)하고자 신청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출판된 C 논문보다 먼저 출판된 B 논문이 선취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B 논문을 취소 신청하기 위해서 B 논문의 공동저자와 책임저자들에게 먼저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고, 이 절차를 갖지 않았다면 B 논문의 공동저자와 책임저자의 저자됨(authorship)이 문제가 되어 저자됨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학술대회 초록집과 이차출판

학회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발표자료집을 제작하는데 발표논문 1편당 A4 25면 정도의 분량으로 원고 전문이 실리게 될 때 이후에 이 전문을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통상적으로 용역연구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연구는 결과발표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연구결과의 요약을 모아 발표자료집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발표자료집은 서지사항을 갖추어 등록된 학술지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학술지에 게재가능하다.

타 학술대회 발표 연구의 게재

A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심포지움으로 발표되었던 논문을 A 학회가 아닌 B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심포지엄에 발표한 초록이나 proceeding 인 경우 타 학술지에 원저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타 학술지에 게재 시 접수 논문 표지 하단에 “본 논문의 주요 요지는 0000년 0000심포지엄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타 학술지의 게재 원본에 이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록집에 발표된 원고의 학술지 게재

학생이 연구 수행 후 ISSN에 등록되지 않은 교내 proceeding 에 게재한 후 학술지 게재하면서, 제1저자를 지도교수나 그 외 연구자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학술대회나 기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에 수록된 초록이나 proceeding은 정식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초록, proceeding은 전문가심사가 이루어진 정식 논문이 아니고 단순히 특정 목적의 자료로 준비된 것이다. 하지만 연구논문 모음집(proceeding)에 ISSN이 부여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ISSN 번호가 없는 교내 보관용 모음집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초록, proceeding의 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은 중복출판이 아니다. 초록, proceeding의 내용을 정식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논문의 저자는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Updated December 2013)의 지침이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발행 출판윤리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저자됨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저자들의 합의로 저자목록을 구성하고, 저자목록에서 제1저자는 초록, proceeding의 연구에서의 제1저자가 그대로 제1저자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약해서 연구를 더 추가하여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제1저자가 바뀔 수 있다. 이 역시 상식적인 선에서 책임저자가 공저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며,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지도교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대중 매체에 게재할 경우

학술대회 발표된 논문 내용 중 일부를 신문사의 학술면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연구결과를 학술대회에서 초록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직 논문이 출판되지 않은 단계로 간주한다. 따라서 초록 내용이 신문이나 기타 언론에 기사화되었다더라도 완성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복출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술대회에서 초록으로 발표한 내용 아직 전문가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대중매체에 게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매체를 본 환자 등이 내용에 대하여 의사에게 문의하였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의사가 갖고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초록만 있는 상태에서는 대중매체에 알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분절출판(salami)

연구 기간과 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된 분절출판

3편(A, B, C)의 논문이 국외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 3편은 연구대상(A 논문의 연구대상은 주요우울장애 정신질환자와 정상대조집단, B 논문은 양극성장애를 가진 조증정신질환자와 정상대조집단, C 논문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정상대조집단)은 다르나 연구기간과 연구방법이 동일하고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의학연구에서 연속으로 시행된 연구는 문제되지 않는다. 연속으로 작성된 경우 제1편에 계속될 연구를 예고하는 것이 좋고, 원칙적으로는 같은 학술지에 연속 게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사례는 동일한 연구계획 아래 얻어진 결과를 각각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어 한 연구를 세 개로 나눈 분절출판(salami)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고를 접수한 날짜가 상당 기간 차이가 나는 경우 다년간 연구의 연속결과물로 제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절차나 저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결과물을 나누어 제출한 의도가 있으면 이는 대상을 분할한 분절출판이다.

분절출판, 연구 대상의 범위가 다르나 일부 대상이 같은 경우

두 논문(A, B)는 같은 시기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투고 되었고, B 논문의 연구대상은 A 논문의 사용된 대상의 일부이다. 즉, 두 논문은 동일한 국가 연구자료에서 연구대상의 범위만 달리하고, 나머지 연구방법이나 결과는 동일하다. 각각 다른 결론이나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 없으며, B 논문의 내용이 A 논문에 포함되어 있다. 두 논문의 책임저자가 동일하고, 접수일이 유사함에도 각각 논문의 공동 연구자의 소속이 다르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B 논문은 A 논문을 부분 발췌한 분절출판이다.

분절출판, 동일 대상을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결과를 보고한 경우

A 논문은 도플러가 질병을 예측하는데 경피산소압 검사와는 유용성이 있으나 CT 혈관조영술은 유용성이 없음을, B 논문은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도플러와 CT 혈관조영술 모두 경피산소압 검사에서 유용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두 논문(A, B)은 동일한 자료에 대해 분석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다른 결론을 얻었음을 보고한 경우이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두 논문은 “positive논문”을 “negative논문”으로 만들어 의학적 가치를 상실시킨 논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상 환자와 검사방법 동일하고 그림의 일부 사진이 동일하다. 연구대상과 연구 방법이 동일하나 서론과 방법에서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두 논문은 분절출판이다.

동일대상에서 여러 결과가 확인된 경우

한 균주에서 항균제 내성 관련 효소가 5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효소의 정상 규명만으로도 하나의 논문이 되기에 이들 효소를 각각 나누어 보고할 경우 한 균주에서 발견되었기에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중복출판의 기준 중 '한 균주에서 항균제 내성 관련 효소'라는 범위로의 동일 결과에 속한다. 비록 5가지 다른 효소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각각 하나씩의 의미를 부여할 새로운 발견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5개 효소를 함께 묶어서 발표 되어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각을 분리하면 분절출판과 나아가 내용의 표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출판할 때 고려할 것은 1) 결과를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 수 있는 지, 즉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할 경우 주제가 달라져서 어색한 논문이 되는지가 고려되어야 하고, 2) 독자에게 하나의 논문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 따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 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개의 논문으로 작성 가능하고 한 번에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 나누어 출판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

지적재산권과 Open Access

블로그에 올릴 경우 지적재산권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개인의 블로그에 올리려 하는데 가능한가?

답변: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블로그에서 의편협 홈페이지에 있는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으로 링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의편협 사무실에 사용 신고를 하면 허락받고 사용할 수 있다.

다학제 임상진료지침의 여러 학술지 게재

여러 학회가 모여 연구한 다학제 임상지침을 1) 개별 학회지에 모두 게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2) 어떤 게재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가? 3) 발표시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가 아니면 2차 게재 형식으로 해야 하는가? 4) 모든 학회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

답변: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개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가이드라인은 같은 내용이고, 서지 사항도 같아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개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논문의 종류를 증설이나 원저로 취급하지 않고 〈Editorial〉이나 〈가이드라인 소개〉라는 항목으로 분류하고, 게재하는 목적과 가이드라인의 출처에 대해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본래 만든 학회나 집단의 것이므로, 개별 학술지가 각각 가이드라인의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출판물은 Open Access 학술지이면 자료가 전부 공개된 것이기에, 그 내용을 다른 자가 표나 그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출판된 학술지의 학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pen Access 저널에서 저작권인계동의서

온라인 학술지로 Open Access (OA) 학술지이다. 현재는 ‘저작권인계동의서’를 공저자에게 받고 있는데 OA 저널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기에 공저자에게 출판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

답변:

우리나라 학술지는 Open Access (OA) 학술지라도 저작권은 모두 학회가 가지고 있다. OA 학술지의 저작권이 저자에 있다는 것은 편당 3,000불씩 내는 다른 나라 경우이다. 즉 OA 학술지에서 저작권을 개별 저자가 가지는 경우(예, PLOS 계열 학술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학회가 가지고 있다. 학회는 공저자들에게 모두 ‘저작권인계동의서’를 받아서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것이다.

Open Access 학술지의 인용

Open Access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그림과 표를 해당 잡지 편집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

답변:

개방학술지(Open Access Journal)의 정의에 따라 원전만 밝히면 가져다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Open Access의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할 경우에는 표, 그림을 인용하는 학술지가 비영리 목적으로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 없다. 그렇지 않은 모든 학술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원전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발행인이 상업출판사라면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Open Access 적용 시기

학술지가 Open Access (OA) 선언을 하였다면 선언 이전에 발행되었던 논문들도 동일하게 OA 적용을 해야 하는가? OA 선언 이전의 논문 적용은 발행기관이 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언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

답변:

Open Access (OA)는 각각 내용(contents)마다 선언되는 것이므로 선언 이전에 발행한 논문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논문의 저작권이 학술지/학회에 있기 때문에 학술지/학회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학술지/학회에서 OA로 바꾸겠다고 정책을 세우고 학술지가 그 정책을 표방하고 학술지 논문마다 OA 논문이라는 것을 표기하면 그 때부터 OA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OA 선언 시점 이전에 출판된 논문은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PDF 파일을 OA가 적용된 것으로 바꾸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도 있지만,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학술지/학회에서 언제부터 OA를 적용시키겠다고 논문목차 페이지 등에 선언하고 표방하면 OA 논문으로 인정 가능하다.

Open Access 관련 인용 (1)

Open Access (OA) 학술지는 출처만 밝히면 원학술지 출판사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가?

답변:

Open Access (OA)에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할 경우 출처를 밝히고 비영리학술지에 출판을 하면 원학술지 출판사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내 의학학술지는 모두 비영리이므로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단행본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OA는 출처만 인용하면 되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학술지 출판사는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다. 즉 OA라고 하더라도 허가권의 종류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Open Access 관련 인용 (2)

의료기기 회사가 당사의 임상자문의가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자사의 제품 광고와 홍보에 인용하고자 논문이 투고된 학술지 편집인에게 문의하였다. 학술지는 Open Access (CCL 3.0)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답변:

Open Access (OA)의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할 경우에는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논문을 발행한 학술지/학회가 저작권인계동의서를 받았으므로 학술지/학회에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논문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학술지/학회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즉, OA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면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사용하라고 동의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외국학술지의 논문인용

해외출판사에서 발행한 논문에서 그림이나 표를 인용할 경우 각주에 “modified from” 등의 형태로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Copyright Clearance Center에 정식으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또한 원본 그림을 약간 수정하거나 표를 변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한 논문에 표를 5-6개 한꺼번에 인용할 경우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답변:

Open Access의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하는 학술지이면 해당 그림이나 표에, 원 논문의 출처를 밝히고, 참고문헌 목록에 출처 논문을 인용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상업학술지에 있는 표나 그림을 인용할 경우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본 그림이나 표를 수정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모두 CCC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러 개를 인용할 경우에도 해당 표 전부를 각각 CCC에서 허락받아야 한다.

한글, 영문 학술지의 동시 발행

모 학술지에서 국내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PubMed Central 과 같은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기 위해 한글본과 이를 번역한 영문본을 함께 수록하고자 한다. 이 경우 1) 한 호에 같은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따로 조판하여 함께 출판한 후 PubMed 등에는 영문본(PDF 혹은 인쇄본)만을 발송하는 것도 무방한지 2) 한 호에 같은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따로 조판하여 영문본만 인쇄하고 국문본은 Web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PubMed 등에는 영문본(PDF 혹은 인쇄본)만을 발송하는 것도 무방한지?

답변:

학술지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인쇄본과 온라인본이 동일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에 대한 논문은 언어와 무관하게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발행하는 것은 중복출판에 해당한다. 이를 동시에 출판할 경우 이차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발행하면, 1) 원저 학술지의 학술성이 위축되거나 소멸하고, 2) 논문 서지 사항의 혼동을 초래하며, 3) 논문에 부여하는 DOI 관련 자료에 혼선과 오류가 발생하고, 4) 향후 논문 인용 시 혼동이 초래된다. 따라서 한글본과 영문본의 2개를 동시 혹은 시간의 차이를 둔 이차출판으로 발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각각 발간하는 것은 이차출판과는 다르다. 이차출판은 책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논문만 골라서 소수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책 전체를 이차 출판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원저로서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

저작권인계동의서

모 학술지는 투고규정 중에 저작권관련 내용이 있지만 저자 사인을 포함하는 저작권이전 계약서를 받는다. 이 경우에 논문의 저자와 저작권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출판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예: 기관이 학회이면 학회)가 가진다. 저자(들)은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출판 전에 저작권인계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에 저자들 모두의 서명과 사인을 해서 제출한다. 이러한 저작권인계동의서는 대부분 학술지가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저작권인계동의서와 저자동의서는 다른 것으로 저자동의서는 논문제출 시 저자(들)이 그 논문의 저자됨(authorship)에 동의하여 하는 절차이다. 이는 논문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따라서 저자동의서와 저작권인계동의서는 구분하여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

1. 상업적 목적의 별책 사용에서 의편협이 정한 기준은 없으며, 발행처가 상업회사인 경우는 그 회사의 기준에 의하고, 비상법적 학회지인 경우도 학회의 policy의해 운영되며 기준은 없다.

JKMS의 예를 보면 1~1,000부 인쇄: 1부당 1\$, 1,001~3,000부 인쇄: 1부당 0.75\$, 3,000부 이상 인쇄: 0.5\$이다. 참고하여 학회에서 정하면 된다.

2. 의편협이 제공하는 표준형 저작권인계동의서의 양식은 없다. 의편협 홈페이지에 가면 중요 학술지의 투고규정이 모여져 있다. 이 투고규정 속의 저작권인계동의서 들을 참고하여 만들면 된다. 대부분 중요 학술지의 양식은 유사하며, 이것을 모방하여 작성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국문번안한 설문지의 사용

영문 설문지를 번안한 한글판 설문지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설문지 내용을 부록에 제출하였다면 1) 설문지를 재번역(retranslation) 해야 하는지, 2) 영문판으로 작성한 뒤 개정해서 사용을 했다는 내용으로 써야 할지, 3) 부록에 삽입하지 말고 원고 안에 풀어서 작성한 뒤 참고문헌 표시를 해야 하는가?

답변:

설문을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설문지를 논문의 말미에 부록으로 제공하여 독자들이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다. 투고하는 학술지의 투고규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부록으로 첨부하는 것이 다른 연구자나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논문 부록에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를 추가할 때, 추가되는 설문지의 언어는 설문이 진행된 언어로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지 문항이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루어져 공인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한글로 번역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번역된 설문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글판으로 번안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영어로 단순 번역하여 부록에 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설문지를 번역할 때 허락을 받고 한글로 번역하였는지(또는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저자가 확인해야 하고 편집인이 검토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번안한 설문지의 경우 부록에 삽입되는 설문지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이 결정한다. 설문지의 경우 논문의 보조적인 자료로서 원본 그대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논문 작성에 사용된 자료를 어떤 이유로든 변형시켜서 첨부한다고 하는 것은 논문의 재료 혹은 자료를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자료 사용 동의

systematic review나 meta analysis를 할 때 연구에 자료가 포함된 인용연구에 대하여 저자들에게 자료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reference에 명기로 충분한가요?

답변:

이미 출판된 자료는 공개된 내용이다. 저작권을 가진 곳의 허가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단, 대상과 방법에서 출처를 기재하고 이에 따른 참고문헌에서 목록에 기재하면 될 것이다.

투고규정 인용

A 학술지가 현재의 Aims & Scope 및 Author guide, checklist 등을 점검하여 수정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윤리규정 관련하여 다른 학술지의 윤리규정을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윤리규정에 다른 학술지에서 인용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용허가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영문 투고규정을 작성할 때 여러 곳의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투고규정은 많은 부분이 공통된 내용을 가지므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경우 한 개의 잡지 것을 그대로 통째로 동일하게 사용하면 곤란하며, 자신의 학술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특히 aims and scope나 다른 부분에서 학술지의 특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차별되어야 한다. 윤리규정을 타 잡지의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인용처를 밝히는 것도 모두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기존의 것을 변경, 수정하고, 인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반자, 위반논문 처리

Retraction 논문의 처리

저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학술지 논문 한 편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를 학술지에 알렸고, KCI에 등록된 원문논문은 삭제한 상태이다. 학회 쪽에서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는가?

답변:

논문이 이미 인쇄본으로 출판되고 학술지의 자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논문을 어떠한 이유(자진 철회 혹은 출판윤리 위반 등)로 데이터베이스에서 retraction의 공식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의편협에서 발행한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의 “6장.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에 기술된 <취소논문 공지 절차와 형식>을 따라서 하면 도움이 된다. 논문의 자진 철회나 출판윤리 위반에 의한 철회의 경우 모두 처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취소를 하는 경우 1) 학술지에 취소기사를 일반논문처럼 실어서 목차에 등재하고, 2)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논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은 남겨 둔 상태에서 취소논문의 상단에 “논문취소(retraction)” 또는 “논문취소 공지(Notice of retraction, Retraction notice)”로 표시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취소논문 레코드 처리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취소논문 데이터베이스 처리

논문이 취소된 경우 저자에게는 어떤 벌칙을 주어야 하는가? 취소논문은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며, PMC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먼저 논문취소가 발생한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이나 다른 곳에 표절의 정의와 정책에 대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COPE flowchart에서 기술된 것처럼 저자의 위반 정도가 중대(major)한지 사소(minor)한 것인지 판단은 해당 학술지에서 한다. 저자에 대한 처벌수위의 정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학술지에서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 논문취소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회의에서 결정하여 편집장이 학술지에 공지한다. 논문취소 공지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 형태로 한다. PMC를 포함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취소논문에 대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고 전에 입력한 취소대상 논문과 서로 연결한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자진취소 논문의 처리

학회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중복출판 논문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고 그 논문을 철회해 준다고 가정할 때, KoreaMed에서도 조건 없이 “저자에 의한 자진철회”로 처리해 줄 수 있는가? 또 과거 Retraction 논문까지 “저자에 의한 Withdrawal”로 변경 처리하여 줄 수 있는가?

답변:

이미 발표된 논문에서 발견된 중복출판 논문의 사후처리 과정이기에 논문취소 사유를 “저자에 의한 자진철회”로 하여 다음에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취소에 대한 공지를 해주면 KoreaMed에서는 취소논문에 대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고 전에 입력한 취소 대상 논문과 서로 연결하여 처리한다. KoreaMed에 이미 등재된 내용을 변경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논문의 취소 처리

해당 국내 학술지가 외국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학술지에 투고 게재된 종설의 저자가 논문취소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내 학술지가 외국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이 가능하게 되어 저자는 자신이 종설을 작성하면서 참조한 특정 논문과의 중복출판 사실의 표명없이 철회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답변:

이미 발표된 논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된 경우 취소한다 해도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면서 취소 사실이 추가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차출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해도 그 사실이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논문을 취소한다면 그 사유를 기술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러므로 해당 종설이 다른 곳에 이미 발표한 종설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만약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종설을 두 번 발표하였다면 나중 것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SCIE에 등재된 학술지의 향후 위상을 위하여 국제 규격에 맞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한다”는 사유를 붙여서 취소절차를 적절하게 취하면 된다. 그렇지만 학술지에 누를 끼쳤으므로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논문을 취소하면서 특정 논문과의 중복출판 사실을 천명하지 않고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복출판 발견 후 출판사에 통보

국문 학술지(A)에 증례를 보고한 후 같은 증례를 외국 학술지(B)에 영어로 중복출판하였다. 이때 A 학술지가 B 학술지에 중복출판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문 증례보고를 취소하면서 기관장께 중복출판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답변:w

논문이 먼저 출간된 A 학술지에 선취권과 저작권이 있으며, 외국 학술지 게재는 이차출판에 해당한다. A 학술지는 B 학술지에 이미 A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B 학술지에 중복출판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중복출판 사실을 통보받은 외국 학술지는 논문취소를 포함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저자에 대해서는 각 학회의 결정에 따르는데 의편협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임상시험의 보고

IRB 승인이나 임상시험등록을 하는 논문은 원저에 국한하고, 증례보고는 생략해도 되는가?

답변:

IRB심이나 임상시험 등록 대상인지의 연구윤리 관련 범주와 original research 여부인지의 관련 범주가 반드시 일치되지 않으나 일반적인 IRB심이나 임상시험 등록은 original research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증례보고는 대개 3 예 미만의 경우 IRB 심의를 면제하나, 그 이상이 되면 IRB심의를 요구받는다. 임상시험 등록은 임상시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IRB심이는 (1) 실험적 연구 (2) 관찰적 연구 (3) 개인 정보 이용 연구 -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 포함이 - 이 모두 해당된다.

이와 상관없는 종설연구나 메타 분석 등은 IRB 심의 대상은 아니다. IRB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심의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리는 일은 먼저 저자의 책임이며, 출판인, 편집인, 심사자는 이를 확인할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